

세법연구 12 - 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2012.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마 정 화 전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현황 및 채권 과세제도	10
1. 채권시장 현황	10
2. 채권 관련 과세제도	12
가. 채권 과세제도	12
나. 금융상품 간 과세 비교	16
III. 주요국의 채권 양도차익 과세사례	17
1. 미국	17
가. 개관	17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19
다. 거래세 운영 여부	28
2. 일본	28
가. 개관	28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34
다. 거래세 운영 여부	47
3. 프랑스	47
가. 개관	47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49
다. 거래세 운영 여부	50
4. 영국	51
가. 개관	51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54
다. 거래세 운영 여부	62
5. 독일	64
가. 개관	64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66
다. 거래세 운영 여부	68
6. 호주	69
가. 개관	69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71
다. 거래세 운영 여부	73
IV. 채권 자본이득 과세 국제비교	75
1. 채권 자본이득 과세방식	75
2. 채권의 보유기간 및 유형별 과세상 차이	77
3. 소득공제 및 양도손익 간 통산	79
V. 결론 및 시사점	82
참고문헌	85

표 목 차

〈표 II-1〉 채권 거래실적·····	11
〈표 II-2〉 채권과 관련된 분리과세 이자소득·····	13
〈표 II-3〉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15
〈표 II-4〉 금융상품 과세제도 비교·····	16
〈표 III-1〉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19
〈표 III-2〉 미국 개인소득세율 ·····	20
〈표 III-3〉 채권 양도이익의 적용세율 ·····	21
〈표 III-4〉 자본이득의 과세방법 ·····	26
〈표 III-5〉 발행기관에 따른 채권의 종류·····	31
〈표 III-6〉 채권(공사채) 양도차익 과세 ·····	31
〈표 III-7〉 채권 종류별 양도 시 과세방법·····	35
〈표 III-8〉 일본의 소득세율·····	38
〈표 III-9〉 채권의 상환차익에 대한 원천분리과세 세율·····	39
〈표 III-10〉 상환차익에 과세되는 채권의 종류·····	44
〈표 III-11〉 자본이득 규모에 따라 추가되는 세율·····	49
〈표 III-12〉 영국 양도소득세율 및 주요 공제 변천·····	54
〈표 III-13〉 영국의 양도소득세 세율·····	56
〈표 III-14〉 영국의 개인에 대한 연간면제금액 변천·····	59
〈표 III-15〉 독일의 자본소득과세 변천·····	65
〈표 III-16〉 독일 종합소득세율·····	66
〈표 III-17〉 호주 거주자의 소득세율·····	72
〈표 III-18〉 호주 CGT 순양도차익 계산방식·····	72

〈표 IV-1〉 채권 자본이득 과세 방식	77
〈표 IV-2〉 보유기간 및 자산 유형별 과세상 차이.....	79
〈표 IV-3〉 소득공제 및 양도손익 간 통산.....	81

그림 차례

[그림 II-1] 채권과 주식의 거래대금 추이.....	11
[그림 II-2] 채권 금리 추이.....	12
[그림 II-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15
[그림 III-1] 미국의 양도손익(자본이득) 계산구조.....	22
[그림 III-2] 영국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58
[그림 III-3] 채권 양도손익 과세방식.....	70

I. 서론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 2012년 채권 거래대금은 7,320조원으로서 2007년과 대비하여 5년 만에 2.7배로 증가함

-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 중도환매하게 되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음

- 현행 세법상 채권 투자수익 중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투자자의 형태와 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짐
 -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그러나 개인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익이 과세됨
 - 법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됨

-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은 금융자산의 다른 종류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와의 차이가 있음
 - 주식 양도차익이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와 대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됨
 - 또한 2012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

장은 지분율 4% 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개정됨

- 이러한 과세방식의 차이는 금융자산 간 과세형평성,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간의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거나 전면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2년 말 세법개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금융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외국에서도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은 2008년에 자본이득세의 세율체계를 간소화하고 여러 공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독일은 2009년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25%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로서 외국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임
 - 다만, 연구범위는 거주자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국내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제도로 함
-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기술함
 - 먼저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채권 관련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서술함
 - 다음으로 주요국의 채권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별로 주요한 양도차익 과세 연혁을 정리하고자 함
 - 또한 채권 양도차익 과세체계로서 과세대상, 양도차손의 계산방법, 세율구조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해 조사함

- 채권 양도차익이 과세될 경우 최종 세액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자본이득 과세 또는 종합과세 시스템에 따라 계산됨
- 따라서 양도차손익 계산방법, 세율구조 및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채권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구분하여 소개함

- 본 보고서에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양도차익’, 자본손실(capital losses)은 ‘양도차손’으로 정의함
 -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을 포함한 것을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정의함

Ⅱ.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현황 및 채권 과세제도

1. 채권시장 현황

- 채권은 발행기관, 이자지급방법, 모집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일반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社債)라 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공채라 함
 - 사채에는 보통사채, 전환사채 등이 있음
 -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이자부채권과 할인채권으로 구분됨
 - 이자부채권은 상환까지의 기간에 표면이자율을 기초로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할인채권은 이자가 없는 대신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액을 발행하고 그 차액이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임
 - 모집방법에 따라서는 공모채와 사모채로 구분됨
 - 공모채는 일반에게 판매되어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이고, 사모채는 특정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고채권임

- 2007년 이후 채권 거래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채권 거래량은 7,171조원, 채권 거래대금은 7,320조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 전체 채권 거래대금은 2007년과 비교할 때 5년 만에 2.7배로 증가한 것임
 - 또한 장외 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내 거래가 장외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높음
 - 2012년 장내 거래대금은 1,304조원, 장외 거래대금은 6,017조원으로 2007년과 비교할 때 각각 4.2배, 2.5배 증가함

〈표 II-1〉 채권 거래실적

(단위: 조원)

	거래량(액면)			거래대금		
	장내	장외	전체	장내	장외	전체
2006	294	3,064	3,357	293	3,061	3,355
2007	316	2,366	2,683	313	2,361	2,675
2008	366	2,816	3,182	364	2,823	3,186
2009	491	4,147	4,638	497	4,219	4,715
2010	562	5,569	6,131	565	5,678	6,242
2011	805	5,780	6,585	815	5,862	6,679
2012	1,280	5,891	7,171	1,304	6,017	7,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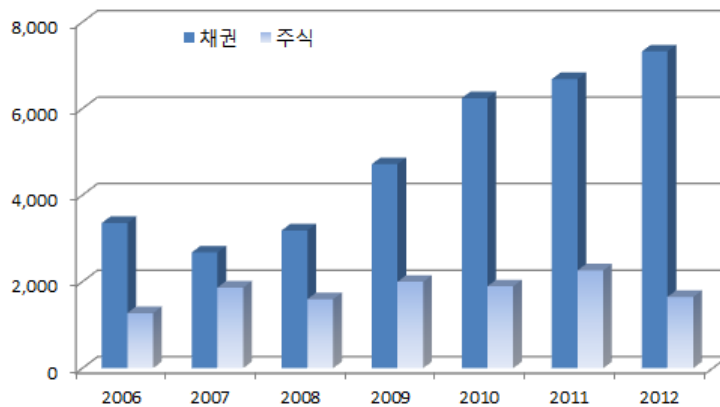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그림 II-1]을 보면 최근 채권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의 성장성은 둔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2007년에 채권 거래대금은 주식 거래대금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4.4배로 격차가 벌어짐

[그림 II-1] 채권과 주식의 거래대금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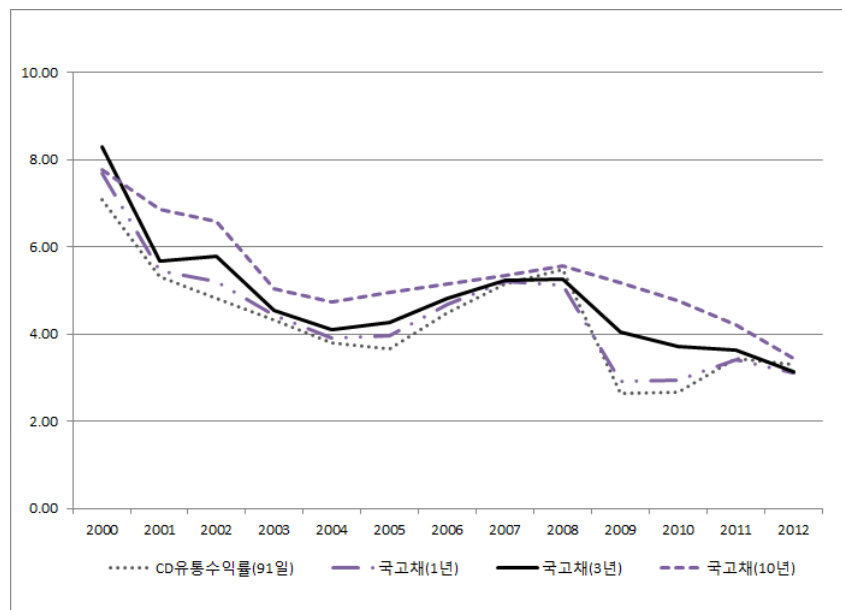


주: 채권 거래대금은 장내와 장외거래를 합산한 것이며, 주식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것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한국거래소, KRX자본시장통계포털

- 한편, 채권 금리는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연 8.3%에서 2004년에 연 4.1%까지 하락하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 4.3%에서 연 5.3%로 다소 금리가 오른 후 다시 하락하여 2012년에는 연 3.1%로 낮아짐

[그림 II-2] 채권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채권 관련 과세제도

가. 채권 과세제도

- 채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법인세로 과세되지만,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이자소득만 소득세로 과세됨

1) 보유단계

-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됨
 -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장기채권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됨(〈표 II-2〉 참조)
 -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6~38%)이 적용됨

〈표 II-2〉 채권과 관련된 분리과세 이자소득

근거법	종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와 할인액(\$129)	30%
	거주자의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4)	14% (비영업대금이익: 25%)
조세특례제한법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이자(\$91의7)	5%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29)	14%

-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채권상의 약정이자뿐만 아니라 할인 발행 시 할인액과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모두 포함함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urchase agreement, Repo, RP)¹⁾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미함

2) 이전단계

- 개인이 자본자산(capital assets)을 처분할 경우 자본자산의 유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되거나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가 적용됨

1) 자금의 소유자가 채권의 소유자에게 채권의 환매계약에 따라 자금을 예치하고 채권을 양도받아 미래의 특정시점에 동종·동량의 채권을 정해진 조건대로 상환·정산하는 것임

- 자본자산은 ① 부동산, ② 채권·주식 등의 금융자산, ③ 그 밖의 골동품 및 금·은·보석 등의 기타자산으로 분류함
 - 「소득세법」상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반면,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또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나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와 같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채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주식과 달리 개인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금융자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부분적으로 과세되지만, 채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권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손 통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함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의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음
 -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주식은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함
 -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로서 부동산과 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함

[그림 II-3]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구조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주식은 20%의 세율이 적용됨
 - 그러나 투기성 부동산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40~70%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의 세율이 적용됨

<표 II-3>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대주주 ¹⁾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주: 1)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임
 자료: 홍법교·김진수(2010), p. 56.

나. 금융상품 간 과세 비교

- <표 II-4>과 같이 금융자산의 보유단계 또는 양도단계의 과세방식은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 주식, 채권, 혼합증권은 보유단계에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한편, 양도단계에서 거의 과세하지 않음
 -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양도단계에서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파생상품은 보유단계와 양도단계 모두 과세되지 않음
 - 간접투자상품인 펀드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다만, 양도 시에는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직전 결산 이후 수익)만 과세함

<표 II-4> 금융상품 과세제도 비교

	보유단계	양도 또는 환매
주식	배당소득 과세	원칙: 비과세 예외: 비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채권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혼합증권 (CB, BW 등)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파생결합증권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
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펀드	배당소득 과세	배당소득 과세

자료: 문성훈(2010), p. 360.

Ⅲ. 주요국의 채권 양도차익 과세사례

1. 미국

가. 개관

1) 채권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미국의 경우 채권을 포함한 자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 의 별도서식인 Schedule D에 장기보유자산과 단기보유자산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 자본자산(capital asset)이란 개인용 자산 또는 투자용 자산을 의미하며, 주택, 가구, 자동차, 주식,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함
 - 자본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 업무용 상각자산, 업무용 부동산자산 등임
-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액에서 판매 당시 수정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수정장부가액은 매입 당시 기초장부가액인 매입비용에 매입 후 발생한 비용 등을 가산하고 손상에 따른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함
 - 기초장부가액의 경우 대부분 투자원금인 매입비용을 의미하지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공정시장가치 등이 기초장부가액이 될 수 있음
-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손익(capital gain or loss)에 대해 과세가 발생하고 양도

손익은 자본이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본이득과세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함

- 보유기간 1년 이하인 경우 단기, 그 외의 경우 장기로 구분함
- 단기양도이익(short term capital gain)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양도이익(long term capital gain)의 경우 자본이득세율로 과세함

□ 일반적으로 채권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양도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wash sale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양도손실은 양도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

- wash sale이란 채권을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로 판매한 후 유사한 자산으로 30일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을 말함

□ 채권의 양도손익은 다른 자본자산의 양도손익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장·단기별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즉, 단기양도손실은 단기양도이익에서 차감하고 장기양도손실은 장기양도이익에서 차감하며, 손실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함

2)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혁

□ 자본이득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1942년 이후 정착되었고 이때부터 장·단기를 구분하여 과세하기 시작하였음²⁾

- 단기양도차익은 일반소득과 같이 종합과세하고 장기양도차익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음
- 1986년 근본적 조세개혁을 통해 장·단기 구분을 폐지하고 양도소득도 일반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에 일반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8%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조치가 다시 적용됨
- 1997년에는 장단기 구분 기준을 18개월로 변경하고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에서 20%로, 낮은 세율은 15%에서 10%로,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2) 홍범교·김진수(2010), pp. 63~64.

양도소득은 18%에서 8%로 하향조정하였음

- 1998년부터 장단기 구분을 다시 1년으로 조정하였고 단기양도소득은 일반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양도손실은 양도소득과 전액상계하고 연간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과세체계를 갖추었음

- 199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세율 변동은 <표 Ⅲ-1> 과 같음

<표 Ⅲ-1> 미국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단위: %)

1998.7~2000		2001~2003.5		2003.6~2007		2008~2012	2013 ⁴⁾	
소득세율 ¹⁾	장기 자본이득세율	소득세율	장기 자본이득세율	소득세율	장기 자본이득세율	장기 자본이득세율	소득세율	장기 자본이득세율
-	-	10	10/8 ³⁾	10	5	0	10	0
15	10	15	10	15	5	0	15	0
28	20	27.5/27 ²⁾	20	25	15	15	25	15
31	20	20.5/30 ²⁾	20	28	15	15	28	15
36	20	35.5/35 ²⁾	20	33	15	15	33	15
39.6	20	39.1/38.6 ²⁾	20	35	15	15	35	15
-	-	-	-	-	-	-	39.6	20

주: 1)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적용

2) 전자는 2001년, 후자는 2002~2003.5의 세율임

3) 5년 이상 보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적용

4)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의해 2013 과세연도부터 20% 세율 구간이 추가되었음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1) 과세대상³⁾

- 주식(stocks), 채권(bonds), 재무부증권(treasury bills), 어음(notes) 등 투자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이라 하고 이러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3)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11," p. 14, p. 39.

대하여 과세함

○ 거래 및 사업에 사용되는 주식 및 채권은 투자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장기채권(U.S. Treasury bonds and notes)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재무부발행 증권에는 Treasury bills, Treasury notes, Treasury bonds가 있으며, Treasury bills은 만기가 4주, 13주, 52주인 단기채권이고 Treasury notes의 만기는 1년 이상에서 10년까지, Treasury bonds는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임

2) 세율구조

□ 1년 이하 단기 보유에서 발생한 단기양도이익의 경우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인 누진세율로 과세함

〈표 Ⅲ-2〉 미국 개인소득세율

(단위: 달러, %)

과세표준		세율
독신	부부합산신고	
0 ~ 8,925	0 ~ 17,850	10
8,925 ~ 36,250	17,850 ~ 72,500	15
36,250 ~ 87,850	72,500 ~ 146,400	25
87,850 ~ 183,250	146,400 ~ 223,050	28
183,250 ~ 398,350	223,050 ~ 398,350	33
398,350 ~ 400,000	398,350 ~ 450,000	35
400,000 ~	450,000 ~	39.6

주: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의해 2013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세율임

□ 장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됨

○ 일반 소득에서 10% 및 15%의 과세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의 경우 채권의 장기자본이익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5%에서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개인은 15%, 39.6%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20%의 세율을 적용함

〈표 Ⅲ-3〉 채권 양도이익의 적용세율

(단위: %)

양도이익 유형		세율
단기양도이익		10/15/25/28/33/35/39,6
장기양도이익	39.6% 세율구간 적용자	20 ¹⁾
	25% 이상 세율구간 적용자	15
	10%/15% 세율구간 적용자	0

주: 1)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의해 2013.1.1부터 개인소득세 세율에 39.6%의 최고세율이 추가됨에 따라 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20% 구간이 추가되었음

3) 양도손익의 산출

가) 양도거래의 정의

- 투자자산의 이전은 판매(sale) 또는 교환(trade)에 의해 이루어짐
 - 판매란 현금, 담보, 어음 및 기타 지불약속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임
 - 교환은 기타 자산 및 용역의 대가로 이전하는 것이며 판매의 형태와 동일하게 과세됨

- 해당 거래(transaction)가 판매 또는 교환에 속하는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현금을 받고 자산을 판매한 후 즉시 유사한 자산을 구입하여 대체하는 것(sale and purchase)은 거래(trade)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의 상환(Redemption of Stock)은 판매 및 교환에 해당되며, 상환이 주식에 대한 배당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본손익에 포함됨
 - 주식의 상환은 상황에 따라 판매, 교환, 배당, 기타분배로 처리됨
 - 채권이나 어음의 만기 상환(Redemption or retirement of bond)은 일반적으로 판매 및 거래로 처리됨
 - 5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지배주주의 주식포기(surrender of stock)는 자본손실이 아닌 자본의 납입으로 처리됨

- 연금계약의 대가로 투자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연금의 현가가 투자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과세대상 차익에 해당됨
- 상속에 의한 자산의 이전(transfer by inheritance)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나) 양도손익의 산출

- 투자자산의 양도손익은 양도로 실현된 금액과 수정장부가액(adjusted basis)의 차액으로 산출함
- 실현된 금액이 수정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수정장부가액이 실현된 금액을 초과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함

[그림 Ⅲ-1] 미국의 양도손익(자본이득) 계산구조

(-)	양도가격 양도비용
=	실현가액
(-)	수정장부가액
=	양도손익

(1) 실현가액

- 자산의 판매 및 교환으로 실현된 금액이란 자산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모든 금액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비용이란 상환수수료(redemption fees),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s), sales charges, exit fees 등임
- 실현된 금액은 수취한 현금에 수취한 자산 및 용역의 공정시장가치의 합계 금액임

(2) 장부가액

- 장부가액(Basis)이란 과세목적상 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자산의 처

분(sale or other disposition)에 있어서 손익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가액이 필요함

-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가 최초 장부가액이 됨
- 구입이 아닌 다른 방법 즉, 증여(gift)나 상속(inheritance)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장부가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됨

□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가 되며, 취득원가는 대가로 지불한 현금, 부채, 기타 자산 및 용역 금액임

- 명목이자가 거의 없는 자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명목가격(stated purchase price)에서 간주이자(unstated interest)⁴⁾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이자율이 적용 가능한 연방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간주이자를 적용함

□ 장부가액이 구입원가 이외의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공정시장가치 또는 이전 소유자의 수정장부가액(Adjusted Basis)을 기초로 결정됨

□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장부가액은 매입가(purchase price)에 중개료와 수수료(commissions and recording or transfer fees)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 매입에 의해 취득한 채권이 아닌 경우, 공정시장가치 또는 이전 소유자의 수정장부가액이 취득한 자의 장부가액이 됨

□ 판매한 채권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판매한 채권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장부가액임

- 적절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구입한 날짜 또는 구입가격이 표시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4) 미국 IRS는 표시된 이자율이 최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간주이자율(unstated interest)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자와 관련하여 지나친 공제 및 기타 조세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채권의 장부가액은 액면발행, 할증발행 또는 할인발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 액면발행이란 할인이거나 할증금액 없이 발행하는 것임
 - 액면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채권의 구입가와 채권판매대가 (bond proceed)를 비교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함
 - 채권을 할증발행으로 구입한 경우, 할증금액(premium)은 채권의 장부가액에 포함됨
 - 채권의 보유기간 동안 반드시 할증금액 상각부분만큼 매년 채권의 장부가액을 감소시켜야 함
 - 과세대상 채권에 대하여 지급한 할증금액을 상각하는 경우, 채권의 기간 동안 매년 상각되는 할증금액의 상각부분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이 산출됨⁵⁾
 -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한 경우, 할인된 금액은 당기 소득에 포함하고 채권의 장부가액은 소득에 포함한 할인금액만큼 증가시킴

- 채권 등 부채성 증권⁶⁾ 중 이자가 없거나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됨
 - 이러한 할인금액은 이자소득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즉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municipal bonds)에 대한 할인금액은 비과세임

(3) 할인 금액으로 취득한 채권(debt instrument)

- 최초발행으로 할인발행된 채권의 취득과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5) 비과세채권인 경우 할증금액 상각부분을 공제하지 않음

6) 부채성 증권의 유형에는 US treasury bonds, Corporate bonds, Municipal bonds, Certificates of deposit, Note between individuals, Stripped bonds and coupons,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CDOs)이 있음

- 이자가 없거나 이자가 있더라도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채권은 일반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며, 그 할인된 금액은 이자의 성격을 지님
 - 할인 발행된 단기 정부채권(Short-term Government Obligation) 또는 단기비정부채권(Short-term Nongovernment Obligation)에서 발생한 양도이익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함(비과세 채권인 municipal bond는 제외)
 -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이어야 함
 - 할인금액은 만기상환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1969년 5월 27일 이후 발행된 장기 부채증권의 경우 매년 최초발행으로 할인된 금액(OID: Original Issue Discount)에 해당하는 부분을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하고 부채증권의 장부가액은 총소득에 포함시킨 OID 금액만큼 증가시킴

〈 사 례 〉

- 2009년 2월 2일에 최초 발행가 7,600달러, 10년 만기, 표시이자율 5%, 만기상환금액 10,000달러인 채권을 구입하였음
 - ➔ 2011년 2월 4일에 해당 채권을 총소득에 OID 334달러를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증가한 채권을 9,040달러에 매각하였음
 - ➔ 매각 시점에 실현금액은 9,040달러이고 수정된 장부가는 7,934달러이므로 양도이익은 1,106달러임

-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납세자는 두 가지 과세상황 중 선택할 수 있음
 - 하나는 발생한 할인금액을 소득에 포함하고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소득에 포함한 금액만큼 증가시킨 후 처분시점에 자본이익을 인식하는 방법
 - 다른 하나는 할인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할인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하는 방법

다) 양도손익의 통산 및 순손실의 처리

- 양도손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양도손익은 단기자본이득, 1년을 초과한 자산의 양도손익은 장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함
 - 단기자본이득과 단기자본손실을 서로 상계하면 순단기자본이득 또는 순단기자본손실이 발생하고, 장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손실을 서로 상계하면 순장기자본이득 또는 순장기자본손실이 발생함
 - 순단기자본이득은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함
 - 순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순단기자본손실 < 순장기자본이득) 자본이득세율로 과세함
 - 순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순단기자본손실 > 순장기자본이득, 순단기자본손실 > 순장기자본손실, 순단기자본손실 < 순장기자본손실), 매년 3,000달러까지(부부별도신고 1,500달러)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무기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표 Ⅲ-4〉 자본이득의 과세방법

자본이득 유형	과세방법
순단기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소득에 합산
순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율 적용
순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공제

- 이월된 순손실은 자본이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손실은 일반소득에서 공제함
 - 자본손실을 이월하는 경우 장기 혹은 단기로서 최초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전기에서 이월된 장기자본손실은 당기의 장기자본이득과 먼저 상계하고 난 후 단기자본이득과 상계함
- 다음의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공제할 수 없음
 - 가족 간의 거래

- 법인과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개인 간 거래
- 신탁의 신탁자(grantor)와 수탁자(fiduciary) 간의 거래
- 동일 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수혜자(beneficiary) 간의 거래
- 동일한 신탁자가 만든 다른 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수혜자 간의 거래
- 유산 관리인(executor)과 해당 유산의 수혜자(beneficiary) 간의 거래
- 개인과 그 개인 및 개인의 가족이 통제하는 면세단체 간의 거래

라) 과세가 이연되는 거래(wash sale)

- wash sale이란 채권 등(stock or securities)을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거래를 말함
 - 해당 채권 등을 판매하고 판매한 자의 배우자 또는 판매자가 통제하는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도 wash sale에 해당함
 - 채권 등에는 주식, 계약, 주식이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 등을 포함함
- wash sale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 손실이 주식 및 채권의 중개인(dealer)으로서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
 - wash sale 규정에 의해 손실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 금액은 채권 등의 장부가액에 포함함으로써 공제되지 못한 손실 부분의 실현은 채권 등의 매각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함
 - 새로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은 판매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4) 징수방법

- 양도손익의 과세는 신고납부를 통해 과세되며 Form 1040의 Schedule D(Capital Gains and Loss)를 통해 소득신고 시 함께 신고함
 - Form 1040의 Schedule D에 기록된 거래들의 양도손익에 대한 보고는 별도 서류인 Form 8949(Sales and Other Disposition of Capital Assets)을 통해 이루어짐

- 과세기간 중 중개인을 통해 채권 등(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는 각 양도거래별로 Form 1099-B(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문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중개인으로부터 수취하고 IRS 역시 중개인으로부터 신고서 Form 1099-B 사본을 수취함
 - 납세자는 Form 1099-B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기초로 Form 8949(Sales and Other Disposition of Capital Assets)와 Form 1040의 Schedule D를 작성함

다. 거래세 운영 여부

- 연방 증권거래세는 1965년, 주정부 증권거래세는 1981년 각각 폐지되어 현재 채권 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음

2. 일본

가. 개관⁷⁾

1) 채권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토지, 차지권, 건물, 주식 등 , 특정의 공사채, 금지금, 보석, 서화, 골동품, 선박, 기계 기구, 어업권, 골프 회원권, 특허권, 저작권, 광업권, 토석(사) 등이 포함됨
 - 대출금이나 수취계정 등의 금전 채권은 제외함
- 자산의 양도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 자산을 이전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매매 외에 교환, 경매, 공매, 대물변제, 재산 분여, 수용,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도 포함됨

7) <http://www.nta.go.jp/taxanswer/joto/3105.htm>

- 일반적인 양도거래는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짐
 - 한정승인⁸⁾의 상속이나 한정승인의 포괄유증(개인에 대한 것으로 한정)에 의해 자산의 이전이 있었을 경우에는, 시가(통상 매매되는 가액)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과세됨
 - 지상권이나 임차권, 지역권을 설정해 권리금 등을 받았을 경우, 권리금 등의 금액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시가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됨
 - 수용 등에 의해, 차지권, 어업권 등의 자산이 소멸하거나 그 가치가 감소함으로써 일시에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 그 보상금 등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됨

- 다음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생활용 자산의 양도
 - 가구, 총기, 통근용 자동차, 의복 등 생활에 통상 필요한 동산의 양도는 과제되지 않지만 귀금속이나 보석, 서화, 골동품 등으로, 1개 또는 1조의 가액이 30만엔을 초과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과세됨
 - 강제 환가 절차에 따른 자산의 경매 등⁹⁾
 - 국가 등에 중요문화재를 양도했을 경우
 - 재산을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했을 경우
 - 다만, 물납의 허가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됨

- 양도소득은 양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과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과세됨
 - 분리과세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 등의 다른 소득의

8)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9) 자력을 상실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강제환가절차(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 파산 수속 등)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것에 의한 소득 및 강제환가절차의 집행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그 양도 대금의 전부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

금액과는 구별하여 「조세특별조치법」으로 규정된 세율에 의해서 계산함

- 종합과세는 양도소득의 금액을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 등의 다른 소득의 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으로 규정된 누진세율에 의해서 세액을 계산함
-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익에서 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이지만, 그 양도익은 수입금액에서 취득비와 양도비용의 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양도소득의 금액 = 수입금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
- 양도소득은 세법상 양도자산에 따라 ① 토지·건축물 등의 양도소득과 ② 주식 등의 양도소득 ③ 토지·건축물 등 이외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함
- ③에 해당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을 소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자산(소유기간 5년 이하), 장기양도소득(소유기간 5년 초과)으로 구분함
 -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최고 50만엔)을 공제한 후 잔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특별공제액(최고 50만엔)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50%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
 - 동일 과세기간에 단기양도소득과 장기양도소득 모두 있는 경우에는 우선 단기양도소득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 그 부족액을 장기양도소득에서 공제함
- 채권(공사채)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단·공고(公庫)¹⁰⁾, 민간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음

10) 공고(公庫)는 정부계 금융기관 중 금고, 특수은행을 제외한 특수법인을 이르는 것으로, 현재는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만 존재함. 공고의 설립 목적은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곤란한 분야에 대한 대출”과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도록 보증하는 것”임

〈표 Ⅲ-5〉 발행기관에 따른 채권의 종류

발행 기관	채권의 종류	명칭	상환기간
국가(정부)	국채	개인용국채	3년, 5년, 10년
		중기국채	2년, 5년
		장기국채	10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공모지방채	다양
민간기업	사채	보통사채	다양
	금융채	이자부금융채	5년
		할인금융채	1년
외국 정부/기관/기업	외채	외채	다양

자료: 일본증권업협회, 『증권세제 가이드』, 2011

- 국내에서 발행하는 이자부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다만, 국외발행 할인채권 등과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됨
 - 국외발행 할인채권 등의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이고 신주예약권부사채(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양도이익은 ‘주식의 양도이익’으로 하여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표 Ⅲ-6〉 채권(공사채) 양도차익 과세

채권의 구분	양도차익 과세
이자부채권 할인채권(할인국채, 할인금융채 등)	비과세
제로쿠폰채, 무이자국공채 국외발행할인공사채 등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
주식예약권부사채	주식 등의 양도이익으로 분리과세

- 「조세특별조치법」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①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¹¹⁾하는 것과 ②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③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1)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본고에서는 사업목적의 양도는 제외함

12) 개인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① 사업소득, ② 양도소

- 과세유형별 채권의 종류는 <표 Ⅲ-7>에서 기술하고 있음

2) 양도손익 과세제도 연혁¹³⁾

- 현행 일본 조세제도의 기초가 된 것은 샤우프(C. Shoup)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사절단이 1949년 9월 15일에 발표한 샤우프 세제권고임
 - 이는 포괄적 소득세제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전액 과세하는 등 과세베이스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세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후 1953년부터 일본이 독립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자 샤우프 세제를 대폭 수정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의 도입과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 비과세 조치를 취하였음
 -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과세 조치 등이 도입되면서 점차 세금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폐해가 지적되었음
- 1987년 9월부터 1988년 12월에 걸쳐 '발본적인 세제개혁'이 진행되어, 1989년부터 대부분의 조세제도가 새롭게 실시되었음
 - 1989년 주식 등의 유가증권 양도익에 대한 원칙 과세화 조치가 취해지고 이자소득 원천분리과세를 도입하였음
- 1989년 4월부터는 주식 양도익에 대하여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의 선택제도를 도입하였음
 - 신고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하면 주식양도익에 대하여 20%(주민세 포함 시 26%)의 세율로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하고, 원천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하면 양도대금의 5%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주민세 비과세)함

특, ③ 잡소득의 3종류로 과세됨

13) 국중호·한상국(2006), pp. 235~241에서 요약·정리함

- 이에 대해, 20%의 분리과세가 누진소득세하에서 고소득자를 우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음
- 이후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향후 저축률의 상승이나 금융자산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제화의 진전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과세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2004년 6월 15일 일본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가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에 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발표하였음
- ‘금융소득과세 일체화’는 개인의 투자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 금융상품 간 과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며 개인의 투자위험을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다른 금융소득과의 과세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소득, 외화표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만기보험금이나 보험중도해약반환금 중 보험료 운용성과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공사채 양도익은 주식양도익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것을 제안함
 - 개인투자자의 투자위험 경감을 위하여 금융소득 간 손익통산 범위 확대를 제시함
 - － ① 주식 양도손익과 공사채의 양도손익과의 손익통산 인정, ② 주식 양도손실과 배당소득과의 손익통산,¹⁴⁾ ③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 경감을 위하여 주식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범위를 이자소득까지 확대
- 2003년 1월부터 ‘증권우대세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상장주식의 배당이나 양도익의 세율을 원래 세율인 20%에서 10%(소득세 7%, 주민세 3%)로 경감하는 조치임¹⁵⁾
 - 종래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선택가능한 원천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분리과세제도로 일원화하였고 양도손실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도 처음 도입함

14) 이는 배당과 주식양도손실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과 배당이 분리과세되면 배당과 주식양도손실 간의 과세상 취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임

15) 吉井 一洋(2011), pp. 69~70.

- 2010년부터는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은 자본수익뿐만 아니라 배당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해짐
- 2011년 12월 31일자로 상장주식의 배당과 양도익에 대한 10%의 경감세율 적용시한이 도래하였으나 다시 2년 연장함으로써 2013년 12월 31일까지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경제금융정세가 급변하지 않는 한 2014년 1월 1일부터 20%(소득세 15%, 주민세 5%)의 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증권우대세제’로서 ‘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 2014년 1월부터 도입함
 - 매년 100만엔의 소액투자에서 얻는 배당 및 양도이익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5년임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¹⁶⁾

1) 과세대상

- 개인이 채권(공사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익에 대해 소득세(주민세)의 과세관계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서 종합과세하고 있고 신주예약권부사채¹⁷⁾에 대해서는 양도이익을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함

16) 前田繼男, 『個人投資家の証券稅務讀本』, 2012, pp. 282~352.

17)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임

〈표 Ⅲ-7〉 채권 종류별 양도 시 과세방법

종류	양도 시 과세방법			
① 국외발행할인채권(제로쿠폰채) ② 할인발행의 공사채에 속하는 특정 이자부채권(STRIPS bond 등) ③ 국내발행 할인채권으로 특정의 것 ④ 무이자액면발행채권(무이자공사채 로 할인발행된 것 이외의 것) ⑤ 국내발행 할인채권으로 특정 단기 공사채에 해당하는 것	종합 과세 ¹⁾	양도 소득	보유기간 5 년 이내의 단기양도	단기양도익에서 특별공 제(50만엔) 공제 후의 단기양도익이 과세대상
보유기간 5 년 초과 장기양도 ²⁾			장기양도익(단기양도익 에서 공제한 특별공제액 의 잔액이 있는 경우는 그 잔액을 공제한 후의 장기양도익)의 1/2이 과 세대상	
신주예약권부사채(전환특정사채, 신우 선출자인수권부특정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포함)	신고 분리 과세	주식 등에 관한 양도 소득	상장 등의 것으로 금 융상품거래 업자 등을 통한 양도	2012.12.31까지: 소득세 7% 주민세 3% 2013.1.1~12.31: 소득세 7% 부흥세 소득세액 × 2.1% 주민세 3% 2014.1.1.~: 소득세 15% 부흥세 소득세액 × 2.1% 주민세 5%
			상기 이외	2012.12.31까지: 소득세 15% 주민세 5% 2013.1.1~12.31: 소득세 15% 부흥세 소득세액 × 2.1% 주민세 5%
상기 이외의 할인채권·이자부채권	비과세			

주: 1) 2013년분 이후는 종합과세에 의해 소득세 및 주민세 외에 소득과세의 2.1% 상당액의 부흥
 특별소득세¹⁸⁾도 함께 신고납세하도록 함(復興財源措法¹²⁾)

2) 국외발행할인채(제로쿠폰채) 등. 상기종류의 ①~⑤의 양도에 의한 소득 중 그 양도가 영리
 를 목적으로 계속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의 양도소득이 아니고 종합과세되는 사
 업소득 및 잡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자료: 前田繼男, 『個人投資家の証券稅務読本』, 2012.

18)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ための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시
 행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13년 1월 1일 이후 20.315%(소득세 및 부흥특별소
 득세 15.315%, 주민세 5%)로 변경되었음.
 채권(공사채)의 매매거래 후 최초의 이자지불이 2013년 1월 1일 이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 종합과세 대상 채권

- 개인이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통상의 양도소득(영리목적의 계속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하여, 소득세와 주민세의 종합과세 대상이 된 채권의 형태로 5 가지 형태가 있음¹⁹⁾
- ① 국외에서 발행된 할인공사채를 국내에서 양도한 것에 의한 소득(일명, '제로쿠폰채'라 함)
 - ② 이자부 공사채로 할인발행한 공사채 중 특정의 것을 국내에서 양도한 것에 의한 소득
 - ③ 국내에서 발행된 할인공사채 중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 (구)주택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公庫),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구)도시기반 정비공단 및 (구)주택·도시정비공단 및 외국정부, 외국의 지방공공단체 및 국제기관에서 발행된 것을 양도한 것에 의한 소득
 - ④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 공사채(할인공사채 제외)를 양도한 것에 의한 소득
-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된 것에 적용
 - ⑤ 국내발행 일정의 단기할인 공사채의 양도 소득
- 이자부 공사채로 할인발행한 공사채 중 특정의 것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임
-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deep discount 채권 또는 제로쿠폰채(低쿠폰채))
 - 원본과 관련되는 부분과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것(일명, 'STRIPS bond'라 함)
 - 이자의 계산 기간이 1년을 넘는 것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이자의 계산 기간이 있는 것
- 예를 들면, 최초의 수년간은 이자가 없고 수년 후에는 이자가 있는 형태의 공사채
 -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이 가장 낮은 이자율의 1.5배 이상인 것

이자에 관련된 경과이자의 계산에서 세상당액 산출을 위한 율로 20.315%(세상당액공제 후의 율은 79.685%)를 적용함

19) 措法37の16①, 措法 22년 개정 부칙 67, 措令25の15, 措規18の16, 措法41の12⑨⑩⑪, 措令26の17

- 국내발행 일정의 단기할인 공사채란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으로 상환기간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의 것 중 상환차익에 대해 원천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정단기공사채²⁰⁾임
 - 국채
 - 「사채대체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사채 및 「사채대체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체외채로서 재무성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
 - 「송신법」 제139조의 12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투자법인채
 - 「신용공고법」 제54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채
 - 「보험업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사채
 -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8항에 규정하는 특정단기사채²¹⁾
 - 「농림중앙금고법」 제6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단기농림채

- 종합과세대상 채권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그 특징을 보면, 할인발행이나 무이자채권 또는 특정기관이 발행한 단기채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님

나) 신고분리과세 대상 채권

- 신주예약권부사채(CB: convertible Bond)²²⁾와 같이 특정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분리과세 대상임²³⁾
 -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의한 전환특정사채,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의한 신우선출자인수권부특정사채도 이에 해당함

- 신주예약권부사채란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함

20) 措法41의12⑨⑩⑪, 措令26의17)

21) 措法에서는 ⑤의 특정단기공사채와 ②의 '분리원본대체국채' 및 '분리이자대체국채'를 합해서 '특정대체국채'로 정의함(措法41의12⑫)

22) 종래의 전환사채형·신주인수권부사채(워런트채 포함, 일명 CB채) 포함

23) 措法37의10②三

- 신주예약권부는 사채의 한 형태이므로 확정이자부채권으로서 이자수입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warrant) 부분은 주가와 연동되는 상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됨
- 신주예약권부사채 중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미리 정해진 전환가격에 기초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사채형 신주예약권부사채'라 함

다) 양도차익 비과세 채권

-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되는 채권과 신고분리되는 채권을 제외한 이자부채권 및 할인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는 비과세됨²⁴⁾
- 또한 개인이 이러한 이자부채권 또는 할인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양도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상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음²⁵⁾

2) 세율

- 종합과세되는 채권의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함

〈표 Ⅲ-8〉 일본의 소득세율

(단위: 엔, %)

과세소득	세율	공제액
1,950,000 이하	5	-
1,950,000 초과 3,300,000 이하	10	975,000
3,300,000 초과 6,950,000 이하	20	427,500
6,950,000 초과 9,000,000 이하	23	636,000
9,000,000 초과 18,000,000 이하	33	153,600
18,000,000 초과	40	279,600

주: 2003년분부터는 소득세액의 2.1% 상당액의 부흥특별소득세도 부과됨

24) 措法37의15①

25) 措法37의15②

- 분리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소득세 15%, 주민세 5%)
 - 2013.1.1부터는 소득세의 2.1% 상당액의 부흥특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20.315%의 세율을 적용함

- 상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18% 또는 16% 과세되고 주민세는 비과세됨
 - 2013년 1월 1일부터 19.378%/16.336%로 인상됨

〈표 Ⅲ-9〉 채권의 상환차익에 대한 원천분리과세 세율

	원천징수세율		과세방법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할인채의 상환차익	소득세: 18% 주민세: 비과세	소득세 및 부흥세: 19.378% 주민세: 비과세	원천분리과세
특정할인채의 상환차익	소득세: 16% 주민세: 비과세	소득세 및 부흥세: 16.336% 주민세: 비과세	

3) 양도차익의 과세

가) 종합과세하는 양도소득의 과세

- 채권(공사채)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금액은 양도로 수령한 금액에서 채권의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양도차익 = 채권(공사채)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 - (채권의 취득금액 + 위탁수수료, 소비세 등의 양도경비)

* 양도로 수취한 금액 = 양도(매각)약정 금액 + 수령한 경과이자 상당액 × A

* 취득가액 = 매입약정금액 + (매입 시 판매자가 지불한 경과이자 상당액 × A) + 매입 시 위탁수수료, 소비세 등

- 위의 식에서 A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소득세 15%, 주민세 5%)를 차감한 80%임
 - 이는 경과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2013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율이 20.315%(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15.315%, 주민세 5%)로 변경되어 적용률이 79.685%임

- 양도소득의 종합과세는 우선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 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²⁶⁾
 - 보유기간이 5년 이하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단기보유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단기보유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특별공제액은 최대 50만엔임

$$\text{단기보유양도소득} = \text{단기보유자산의 양도익(A)} - \text{특별공제액(B)}$$

$$* \text{특별공제액(B)} = \text{Min}[50\text{만엔}, (A)]$$

- 장기보유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공제할 수 있는 특별공제액은 50만엔에서 단기보유 자산에 관련된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임

$$\text{장기보유양도소득} = \text{장기보유자산의 양도익} - \text{특별공제액}$$

-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장기보유자산)에는 양도소득 금액의 50%만 과세대상임

$$\text{총소득 금액} = \text{급여 등의 소득} + \text{단기보유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text{장기보유자산의 양도소득금액} \times 1/2)$$

26) 이러한 채권 외에도 골프회원권, 미술공예품, 귀금속 등의 양도익도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 사례 〉

급여소득: 8,000,000엔
매각자산:

	사채 1	사채 2
취득	2002. 6	2009.9
매각	2012. 6	2012.10
취득가격	1,200,000엔	2,300,000엔
매각가격	2,800,000엔	2,900,000엔
매각비용	없음	

소득세의 소득공제 2,300,000엔
주민세의 소득공제 2,150,000엔
세액의 계산

- ① 양도소득 금액: 사채 2(단기): $2,900,000 - 2,300,000 - 500,000 = 100,000$
사채 1(장기): $2,800,000 - 1,200,000 = 1,600,000$
- ② 총소득금액 = $8,000,000 + 100,000 + (1,600,000 \times 1/2) = 8,900,000$
- ③ 세액 계산: 소득세: $8,900,000 - 2,300,000 = 6,600,000$ (과세총소득)
 $6,600,000 \times 20\% - 427,500 = 892,500$ 엔
주민세: $8,900,000 - 2,150,000 = 6,750,000$ (과세총소득)
 $6,750,000 \times 10\% = 675,000$
- ④ 합계세액 = $892,500 + 675,000 = 1,567,500$

자료: 前田繼男, 『個人投資家の証券稅務讀本』, 2012, p. 327.

나) 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의 과세

□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양도익 =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 - 취득가액
- 양도에 의한 수취금액 = 양도약정금액 + (매도자로부터 받은 경과이자 상당액 × A)
- A는 세상당액공제 후의 비율이지만, 종래 원천징수세율이 20%(소득세 15%, 주민세 5%)이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공제 후의 비율로 하여 80%의 비율이 사용되어 왔고 2013년 1월 1일 이후 20.315%로 변경되었음
- 취득가액 = 매입약정금액 + (매입 시 매수자가 지불한 경과이자상당액 × A) + 매입 시 위탁수수료, 소비세 등

-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채권(공사채)의 양도차익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주식 등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주식 등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 또한 양도 시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고지 및 본인확인, '양도대가의 지불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상환차익에 대한 과세

- 채권의 상환차익은 채권이 상환된 때에 지불을 받은 상환금액이 그 채권의 취득 시 소요된 금액(또는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말하며, 상환시기 도래에 의한 만기상환과 발행자에 의한 중도상환 및 조기상환이 있음
 - 채권은 통상 액면금액에 의해 상환되는데, 중도매입에 의한 상환이나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상환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채권의 상환 금액은 액면금액과 동일함
- 개인이 지불받은 채권의 상환차익에 대해 세무상 잡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과세방법은 ① 원천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②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리할 수 있음
- 종합과세란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개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음
 - 개인이 지불받은 채권의 상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은 이자와 유사하지만 이자소득이 아닌 잡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²⁷⁾ 종합과세함
 - 따라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하여 납세함
 - 잡소득에 부과되는 세부담의 정도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이나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세율에 따라 결정됨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누진세율 = 소득금액

27) 所基通35-1

- 채권의 상환차익 금액을 잡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때,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없고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됨
 - 이는 이자부채권이나 예·저금의 이자 수입금액이 그대로 이자소득 금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 한편, 채권의 상환차손에 대해서는 금전채권의 회수불능에 의한 손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타 잡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상환차익은 잡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만, 할인채권 중 일정의 '할인채'의 상환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할인채 발행단계에서 원천분리과세하고 발행가액에 이 원천징수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구입하며, 구입시점에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관계가 종료됨²⁸⁾
 - 원천분리과세과세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원천세율은 18% 2013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및 부흥세 원천세율인 18.378%²⁹⁾가 적용됨

28) 措法41の12①

29) 18%에 부흥특별소득세(0.18×1,021)가 가산된 세율임

〈표 Ⅲ-10〉 상환차익에 과세되는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		상환차익 과세방법
할인 채권	① 국채·지방채(措습26의15①一)	원천분리과세 ²⁾ (발행시 과세) * 주민세 비과세 * 신고불필요
	② 내국법인 사채(措습26의15①二) ³⁾	
	③ 외국법인 사채(措습26의15①三) ⁴⁾	
	④ 외화채 ⁵⁾	잡소득으로 종합과세 * 확정신고
⑤ 특별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⁶⁾		
⑥ 특정단기공사채 ⁷⁾		
	⑦ 기타 할인채권 ⁸⁾	
	⑧ 이자부채권(이자부공사채)	잡소득으로 종합과세 * 확정신고
	⑨ 무이자액면발행채권(무이자액면발행공사채)	

- 주: 1) 할인채란 할인발행공사채 중 措法41의12⑦ 및 措습26의15①에서 규정하는 것
 2) 소득세 원천세율 18%(특정할인채는 16%), 주민세 비과세(2013.1.1부터 소득 및 부흥세 원천세율 18.378%(특정할인채는 16.336)). 특정할인채란 동경만횡단도로건설사업자 및 민간 도시개발추지구가 발행하는 할인채
 3)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채로 '할인채'와 '할인금융채'가 있음. 회사 이외의 내국법인이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 포함
 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할인채권 및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할인채권으로 국내사업에 귀속되는 것(措습26의15①三)
 5) 할인공사채로 「외화공채의발행에관한법률」 1①,③에 의해 발행된 외화채(措法41의12⑦一)
 6) 독립행정법인주택금융지원기구(구 주택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및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구 도시기반정비공고, 구 주택·도시정비공고)가 국내에서 할인에 의해 발행한 채권(措法41의12⑦二, 措습26의15②)
 7) 1999.4.1. 이후에 국내에서 발행된 만기 1년 이하의 채권(措法41의12⑨)
 8) 외국정부, 외국의 지방공공단체, 국제기관이 국내에서 할인발행하는 채권, 외국법인 등이 외국에서 할인발행 하는 채권(제로쿠폰채)

자료: 前田繼男, 『個人投資家の証券稅務読本』, 2012.

〈 원천분리과세 사례 〉

액면 100엔당 발행가액 95엔 할인채의 경우, 발행 시 납입금액은 100엔당 95엔 90전임
 납입금액 = 발행가액 + [(액면금액 - 발행가액) × 원천징수세율]
 = 95엔 + [(100엔 - 95엔) × 18%]
 = 95엔 90전

4) 징수방법

가)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징수함

나) 신고분리과세³⁰⁾

-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주식 등의 매각에 의한 소득'의 과세방식인 신고분리과세방식을 따름
 - 이는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신고분리과세라 함
- 신고분리과세의 신고사무 경감을 위해 '특정구좌제도'를 운영함
 - 주식 등의 매각에 대한 과세제도는 2002년 말까지는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의 선택제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되었고 원천분리과세는 폐지되었음
 - 신고분리과세에서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자신이 그 해의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1년간의 모든 주식 등의 거래를 기록하고 양도로 얻은 수입금액에서 취득비나 양도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투자자에 따라 상당한 사무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투자자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2003.1.1 특정구좌제도를 도입하였음
 - 특정구좌제도란 투자자가 증권회사 등을 통해 주식 등을 매각할 때 그 양도손익이나 신용거래의 손익을 계산하여 납세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 특정구좌제도에는 ① 원천징수선택구좌와 ② 간이신고구좌의 2종류가 있음

30) 일본증권업협회, 『證券稅制 가이드』, 2011, pp. 44~70.

- 원천징수선택구좌란 증권회사 등이 매매손익을 계산하고 매매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투자자를 대신하여 납세하는 제도임
 -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투자자는 확정신고 절차는 하지 않을 수 있음
- 간이신고구좌란 증권회사가 특정구좌를 이용하여 양도한 주식 등의 매매손익을 투자자를 대신하여 계산하고 작성한 1년간의 매매손익일람표(‘특정구좌연간거래보고서’)를 이용함으로써 투자자는 확정신고나 납세를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당해 연도의 최초 매각시점에 원천징수선택구좌를 선택하면 간이신고구좌로의 변경이 불가능함

다) 고지 및 본인확인³¹⁾

- 개인이 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령자의 고지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양도대가의 지불 조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는 ① 특정단기공사채 기타 특정대체국채 등의 양도의 경우, ② 분리과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에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특정대체국채 등이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의 필요는 없고 지불조서의 작성 및 제출도 하지 않음
- 금융상품거래자(증권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2008년 3월 1일 시행하는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이나 이에 준하는 자와 금융 등의 일정한 거래를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확인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음
 - 따라서 세무상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무상은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31) 前田繼男(2012), pp. 330~335.

다. 거래세 운영 여부

- 일본은 과거에 유가증권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로 유가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으나 1998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되었음
 - 유가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양도한 자가 증권회사인지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한 유가증권이 주식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3. 프랑스

가. 개관³²⁾

- 일반적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개인용도 자산(private asset)과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의 양도에서 발생함
 - 개인용도 자산으로는 동산 및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고 사업용 자산은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임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³³⁾ 대상 자산의 유형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과세하고 있음
 - 자산 유형별로 과세면제(exemption) 및 공제(allowance and deduction) 등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³⁴⁾

- 사업용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와 단기보유에 따라 달리 과세함
 -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단기자본이득(short term gains)은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과세함

32) IBFD, France-Individual taxation - 1, Income Tax

33) 개인 또는 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등

34) www.French-Property.com, "French Capital Gains Tax"

- 자본이득을 3년에 걸쳐 과세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
 -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장기자본이득(long term gains)은 16%의 단일세율에 15.5%의 social tax가 가산되어 31.5%로 과세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장기자본이득은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고 5년 이상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과세가 면제됨
 - 자본이득은 양도가격에서 취득원가(acquisition cost)를 차감하여 산출함
- 거주자인 개인이 동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15.5%의 social tax를 가산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34.5%가 됨³⁵⁾
- 부동산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포함함
 - 세율은 2012.8.17.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임
 - EEA 지역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소유기간에 따라 2%에서 8% 사이의 금액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3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총자본이득이 과세면제됨
- 부동산의 경우 양도대가가 15,000유로 이하면 과세면제됨
- 동산 중 보석류 등은 과세대상이지만, 가구류 등은 과세면제임³⁶⁾
- 양도대가가 5,000유로 이하면 과세면제임
 - 2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10% 감면(relief)이 적용되고 1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면제됨
- 2013.1.1부터 자본이득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자본이득세의 기본세율에 추가적인 세금(supplementary rate of tax)이 부과됨

35) 프랑스 또는 EEA 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세율은 48.3%(33.3% +15.5%)임. 조세회피지역 거주자는 50%의 기본세율에 15.5%의 social tax가 가산됨

36) www.french-property.com, “capital gains on shares and personal property”

〈표 Ⅲ-11〉 자본이득 규모에 따라 추가되는 세율

(단위: 천유로, %)

자본이득	세율
50 ~ 100	2
100 ~ 150	3
150 ~ 200	4
200 ~ 250	5
250 ~	6

자료: www.french-property.com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통산이 가능하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 채권의 유형은 이자부채권과 제로쿠폰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채권의 유형과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함³⁷⁾
-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보유기간 6년차부터 매년 자본손익(capital gains or loss)의 3분의 1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므로 8년 이상 보유한 유가증권의 자본손익은 100% 공제됨³⁸⁾
 - 이러한 감면의 보유기간은 2006.1.1부터 적용되므로 최초로 감면이 시작되는 해는 2012년이고 2014년에 100% 감면이 적용됨
 - 2006.1.1 이전에 취득한 경우, 2006.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 채권의 양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19%의 단일세율에 15.5%의 social tax(2012년)를 가산한 34.5%의 세율로 과세함³⁹⁾

37) 日本 PWC(2011), Appendix 3-2

38) France Public Finance General Directorate, Tax Policy Directorate, "The French Tax System", 2011. 7. 31.

39) 2012년까지 주식과 채권에 대해 동일하게 단일세율로 과세하였으나 2013년부터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소득세 체계 내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감면(relief) 혜택이 주어짐
 - 2013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됨

- 2010년까지 연간 양도이익이 25,83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었으나 2011.11.1부터 비과세가 폐지되었음⁴⁰⁾
- 특정 연도에 증권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연도 및 이후 10년 동안 동일 유형의 증권의 양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음⁴¹⁾
 -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었음
- 상환이익은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⁴²⁾
 - 상환손실은 이자부 채권의 경우, 상환일이 속한 연도에 지급받은 이자와 통산할 수 있고 무이자부 채권의 경우에는 통산할 수 없음
-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다. 거래세 운영 여부⁴³⁾

- 프랑스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는 2012.3.14 개정 법안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2.8.1부터 시행함
- 금융거래세의 과세는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이나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이 적격한 시장⁴⁴⁾에서 거래되고 취득한 해의 시가 총액이 10억유로를 초과하는 상장회사가 발

— 2~4년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20%, 4~6년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30%, 6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40%의 감면이 적용됨

40) 日本 PWC(2011), Appendix 3-2

41) 박명호 · 기은선 · 정희선(2008), p. 139.

42) 日本 PWC(2011), Appendix 3-2

43) www.cms-bfl.com, 'The French financial transaction tax'

44) 적격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지역 내의 regulated market과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가 지정하는 시장(recognized market)을 의미함. recognized market으로 지정된 시장은 Swiss Stock Exchange과 다양한 commodity markets을 포함하지만 NYSE, NASDAQ, Hong Kong Stock Exchange는 포함하지 않음

행한 주식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부채증권(debt securities), 집합증권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의 주식이나 유닛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금융거래세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주식(보통주, 우선주), 워런트, preferential subscription rights임
 - 따라서 부채증권, 집합증권투자의 주식이나 유닛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전환사채(convertible and exchangeable bonds)는 프랑스법에서 규정하는 지분증권에 해당되어 금융거래세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만 금융거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짐
 - 따라서 부채증권인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4. 영국

가. 개관⁴⁵⁾

1) 채권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영국에서 자산이 처분된 결과 순이익이 있는 경우 실현되었거나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됨⁴⁶⁾
 - 이러한 양도차익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은 법인세, 개인, 신탁, estate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됨
 - 비과세(exemption) 대상을 제외하면,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모든 이득은 과세대상 이득(chargeable gain)임

45) Tiley and Loutzenhiser(2012), pp. 581~583.

46) Tiley and Loutzenhiser(2012), p. 575.

- 자산(asset)의 개념에는 주택 등의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옵션, 채권, 무체재산권 및 통화(영국 화폐 제외)를 포함함
- 또한 처분(disposal)은 자산의 매각·기부(gift)·교환뿐만 아니라, 부채의 상환도 포함함⁴⁷⁾
- 채권은 자본이득세법(capital gain tax)상 채권자의 자산⁴⁸⁾이지만, 대부분의 채권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적격회사채(qualifying corporate bonds)와 금테증권(gilt-edged securities)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⁴⁹⁾인데, 채권의 대부분이 이들 유형에 해당함
 - 예외적으로 비적격회사채의 양도차익은 과세됨

2) 양도차익 과세제도 연혁

- 영국의 자본이득세는 1965년에 도입한 것으로서 기존 소득세에서 별도 세목으로 분리함
 - 1962년 이전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고, 1962년과 1965년 사이에는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양도차익만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⁵⁰⁾
 - 자본이득세 도입 초기에는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장기양도차익에 대해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차익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였음
 - 1971년부터는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30%의 세율로 과세함
- 1982년에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물가연동공제(indexation allowances)가 도입됨

47)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37.

48)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118.

49) TCGA 1992 §115

50) 홍범교·김진수(2010), p. 66.

- 1988년에는 양도소득에도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40%)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소득세 세율과 일치시킴
 - 1988년 세율 조정은 소득의 유형을 조작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세법개정이었음
 - 적격 비상장회사에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재투자공제(reinvestment relief) 규정⁵¹⁾이 1993년에 도입되는 등 공제규정이 신설되거나 확대됨

- 1998년에는 물가연동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체감적 공제(tapering relief)를 도입함
 - 체감적 공제는 1998년 4월 5일 이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편입비율을 경감하는 제도임⁵²⁾
 - 2002년 4월 6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경우 편입비율은 업무용 자산은 25~50%, 비업무용 자산은 60~100%임
 - 50세 이상의 양도자가 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퇴직공제(retirement relief)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투자공제도 벤처캐피털트러스트(venture capital trust)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됨

- 자본이득세제 간소화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8%의 단일세율로 개정되었고, 체감적 공제는 폐지되었음
 - 세율 조정 결과 업무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08년 4월 5일 이후 처분 시부터 10%에서 18%로 증가된 반면,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세율은 인하됨
 - 이와 함께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백만파운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공제(entrepreneur's relief)가 도입됨

- 2010년 6월부터는 기존의 18% 세율 외에 28%의 세율이 신설됨
 - 수탁자, 사망자의 대리인, 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51) <http://archive.treasury.gov.uk/budget/1996/tr4.html>

52) 자세한 편입비율은 홍범교·김진수(2010), p. 69의 <표 Ⅲ-5> 참조

개인이나 배당소득 상위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28% 세율이 적용됨

- 사업자공제의 대상금액 한도도 점차 증가하여 2011년 4월 6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천만파운드로 인상됨⁵³⁾

〈표 Ⅲ-12〉 영국 양도소득세율 및 주요 공제 변천

기간	양도소득세율	비고
1965.4.5~1982.4.6	30%	- 인플레이션공제 없음 - 업무용자산에 대해 퇴직공제 적용
1982.4.6~1987.4.5		- 물가연동공제(indexation allowances) 적용
1987.4.6~1998.4.5	최고 40%	- 채감적 공제(taper relief) 적용 (업무용 자산의 공제율이 높음)
1998.4.6~2008.4.5		- 인플레이션공제 폐지 - 기업가공제는 업무용자산에 제한됨
2008.4.6~2010.6.22	18%	- 인플레이션공제 폐지 - 기업가공제는 업무용자산에 제한됨
2010.6.23~2013.4.5	기본구간: 18% 그 밖: 28% 사업자공제: 10%	- 수탁자나 대리인의 모든 양도차익은 28% 적용 - 인플레이션 공제 없음

자료: Cave & Wünschmann-Lyall(2012), p. 3.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1) 과세대상

가) 채무증권

□ 채무증권(debt on a security)에 대한 세법상 정의규정은 없고, 법원 판결에 나타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주된 요소로서 해당 채권은 시장성이 있고, 투자(investment)목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수익성이 있어야 함

53) <http://www.hmrc.gov.uk/helpsheets/hs275.pdf>

- 단순채권은 시장성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채권가액이 증가하지 않지만, 채무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⁵⁴⁾
- 이자를 commercial rate로 지급하는 경우, 채무(중도)상환 시 원래 받기로 된 이자수익에 대응하는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투자목적이 있는 것으로 봄⁵⁵⁾
- 수익성 유무도 채권의 프리미엄이나 이자율에 따라 판단함⁵⁶⁾
- 채무증권은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부 채권(secured debt)과는 다른 개념임⁵⁷⁾

□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은 시장성 있는 loan stock⁵⁸⁾을 의미함⁵⁹⁾

- 대부분의 loan stock은 비과세자산(exempt asset)인 ‘적격회사채(qualifying corporate bond)’이므로, 적격회사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⁶⁰⁾⁶¹⁾(TCGA 1992 §115)
- 적격회사채란 1984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한 회사채를 의미함⁶²⁾
 - 예외적으로 1984년 3월 13일까지 발행된 것으로서 1984년 3월 14일 이후 회사채를 차익 과세와 손실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거래(대부분 부부간의 이전⁶³⁾)의 결과로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격회사채에 해당하지 않음

54) CG53424 - Debt on a security: House of Lords decision: marketability

55) CG53426 - Debt on a security: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held as an investment

56) CG53427 - Debt on a security: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old at a profit

57) CG53421 - Securities: debts: definition of debt on a security

58) loan stock은 자금대여의 대가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음
<http://www.investorglossary.com/loan-stock.htm>

59)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118.

60)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7.

61) HMRC, “Debts and Capital Gains Tax,” Helpsheet 296, 2012, p. 2.

62) CG53702 - Qualifying corporate bonds: QCB

63) CG53791 - Qualifying corporate bond: definition: no gain/loss acquisitions

나) 금테증권

- 금테증권(gilt-edged securities 또는 gilts)은 영국 정부가 발행한 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공채를 의미함
 - 금테증권은 파운드화로 표시되고, 대부분 복권채권(lottery bond)인 'Premium Bonds'⁶⁴⁾이거나 고정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를 갖는 상품임⁶⁵⁾
 - 금테증권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가능한 손실로 처리하지 않음
 - 자본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길트의 종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함⁶⁶⁾

2) 세율 구조

- 양도소득세율은 납세자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개인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8% 또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수탁자 및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s)은 28%의 단일세율이 적용임
 - 이러한 세율과 별개로 개인과 수탁자는 사업자공제(entrepreneurs' relief)가 적용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됨

〈표 III-13〉 영국의 양도소득세 세율

(단위: %)

구분		세율
개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구간	18
	기본세율구간 초과분	28
수탁자 및 대리인		28
사업자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10

주: 2010년 6월 23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세율임

64) 이자 대신 복권을 지급하는 채권으로서 국채의 일종임. 'Premium Bond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 참조. <http://www.nsandi.com/savings-premium-bonds>

65) <http://www.hmrc.gov.uk/cgt/intro/glossary.htm>

66) <http://www.hmrc.gov.uk/cgt/gilts-list.htm>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total taxable income)⁶⁷⁾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taxable amount of gains)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구간(basic rates band)을 초과한 경우 28%의 세율이 적용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구간은 법정화되어 있는데, 2012/13 과세연도의 기본세율구간은 34,370파운드임⁶⁸⁾
 - 또한 등록연금(registered pension schemes) 불입분과 기프트 에이드(gift aid scheme)⁶⁹⁾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기본세율구간을 증액함

〈 영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A의 2012/13 종합소득금액은 60,000파운드이며, 2012년 5월에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주식을 매각해 17,000파운드의 양도차익(사업자공제 적용대상)을 실현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투자자산을 매각해 50,000파운드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또한 A는 2012년 12월에 등록연금에 순액 40,000파운드(총액 50,000파운드)를 불입하였다. A가 2012/13에 양도손실을 적용하지 않고, 연간면제금액(annual exemption) 10,600파운드를 투자자산 양도차익에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회사주식 매각분	투자자산 매각분
양도차익	17,000	50,000
- 연간면제금액		10,600
= 양도소득과세표준	17,000	39,400
× 적용세율	10%	7,370 : 18% 32,030 : 28%
= 해당 세액	1,700(A)	10,295(B)
양도소득세액(A+B)	11,995	

기본세율구간: $84,370 = 34,370 + 50,000$
 10% 세율 적용분(사업자공제 적용대상): 17,000
 28% 세율 적용분: $32,030 = (60,000 + 17,000 + 39,400) - 84,370$
 18% 세율 적용분: $7,370 = 39,400 - 32,030$

자료: Cave & Wünschmann(2012), p. 17.

67)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비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함

68) <http://www.hmrc.gov.uk/rates/it.htm#2>

69)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제도로써 개인이 일정 범위의 금액을 현금으로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20~25% 금액을 더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임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610>)

3) 양도차손익 산출방식

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영국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은 다음 [그림 Ⅲ-2]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후, 일정한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결정함⁷⁰⁾
 - 대표적인 공제금액 중 사업자공제는 사업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른 양도차익과 구분하여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2012/13 과세연도의 연간면제금액(annual exempt amount)는 10,600파운드인데,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정 여부가 결정됨

[그림 Ⅲ-2] 영국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양도대가(또는 시가)	
- 양도부대비용	
= 순양도대가(Net disposal proceeds)	
- 총취득원가(Total costs)	... 총취득원가 = 취득가액 + 취득부대비용 + 개량비
= 총차익(Total gains)	
- 사업자공제(Entrepreneurs' relief) 적용 차익	... 사업자공제 적용 차익은 조정 후 10% 세율 적용
- 손실공제	
= 손실공제 후 총차익(Total gains after losses)	
- 연간면제금액(annual exempt amount)	
= 연간면제금액 및 손실공제 후 차익 (Gains after annual exempt amount and losses)	
(조정)	... 18% 또는 28% 구간 결정
× 세율	... 18% 또는 28%
= 산출세액	

70) HMRC, SA 108 Notes - Capital gains summary notes(2012), CGN9, CGN10, CGN20; SA 110 Notes - Tax calculation summary notes(2012), TCSN37

〈표 Ⅲ-14〉 영국의 개인에 대한 연간면제금액 변천

(단위: 파운드)

과세연도	금액	과세연도	금액
1991-92	5,500	2002-03	7,700
1992-93	5,800	2003-04	7,900
1993-94		2004-05	8,200
1994-95		2005-06	8,500
1995-96	6,000	2006-07	8,800
1996-97	6,300	2007-08	9,200
1997-98	6,500	2008-09	9,600
1998-99	6,800	2009-10	10,100
1999-2000	7,100	2010-11	
2000-01	7,200	2011-12	10,600
2001-02	7,500	2012-13	

나) 양도가액 결정방법⁷¹⁾

(1) 일반원칙

- 양도대가(the consideration for the disposal)는 현금, 현금등가물 또는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한 가액을 포함함
- 양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대신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
 - 기부 방식, 위탁자가 신탁에 이전하는 방식 또는 보유주식에 대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대가의 전부 또는 부분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사업상 손실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손실과 관련하여 자산을 매각한 경우
 - 사업 또는 업무수행 과정 중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자산을 이전한 경우

71)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55.

- 채권이 상환된 경우에 같이 매각자산에 대응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시가로 봄

(2) 주식 또는 증권에 적용되는 규정

(가) 상장 증권의 평가방법

- 상장된 주식 또는 증권의 시가는 다음 (a)와 (b)중 낮은 금액으로 산출하며, 관련된 날에 기록된 매매가 없는 경우 (a) 금액으로 함
- (a) '1/4 up rule': 관련된 날에 기록된 두 가격 중 낮은 금액에 그 차액의 4분의 1을 더한 금액
- (b) 매매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특별가⁷²⁾는 제외)

〈 영국의 상장 증권 양도가액 평가 사례 〉

A가 2012년 6월 18일에 상장주식 1,000주를 매각하였다. 매각 당일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은 100~120펜스이고, A의 주식 매각은 각각 98(특별가), 102, 118, 115, 109펜스였다. 이 때 주식의 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단계) 기준가격 결정: $\text{Min} (\text{①}, \text{②}) = 105\text{펜스}$

① 1/4 up rule: $105 = 100 + (120 - 100) / 4$

② 매매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특별가 무시): $110 = (102 + 118) / 2$

2단계) 주식 시가 산정: 1,050파운드 = 105펜스 × 1,000주

자료: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59 Example 3.2.

(나) 비상장 증권의 평가방법

- 비상장 증권의 시가는 공개시장에서 매각된다고 가정할 때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가격임
- 영국 국세청의 자본이득세 증권평가과(SAV)는 비상장 증권, 영업권을 포함한 기타 자

72) 특별가(special prices)는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특별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일별목록(daily official list)에 공시됨
<http://www.hmrc.gov.uk/manuals/cgmanual/CG59513.htm>

산의 평가를 점검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함

- 동일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율의 크기에 따라 (1주당) 주식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분율이 75%인 경우 1주당 금액은 100파운드인 반면, 지분율이 10%인 경우에 1주당 금액은 20파운드임
 -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증권평가과는 전체 보유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함

다) 취득가액 결정방법⁷³⁾

- 취득가액은 전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가 또는 현금을 의미함
-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대신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봄
 - 기부 방식, 위탁자가 신탁에 이전하는 방식 또는 보유주식에 대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대가의 전부 또는 부분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개인 사업상 손실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손실과 관련하여 자산을 매각한 경우
 - 사업 또는 업무수행 과정 중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자산을 이전한 경우
- 그러나 취득자산에 대응하는 거래가액이 없거나 그 거래가액이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저가매수),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대체할 수 없음
 - 이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0, 저가매수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함

73)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p. 75~77.

라) 손실공제⁷⁴⁾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결과, 손실공제 후 총차익이 연간면제금액보다 낮아지더라도 양도차손의 일부 금액만을 공제하거나 이월할 수 없음

- 양도순손실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월된 양도순손실을 공제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이 연간면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음

4) 징수방법

-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개인, 수탁자, 대리인 모두에 대해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됨⁷⁵⁾
 -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신고서(capital gains summary)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다. 거래세 운영 여부

- 영국은 주식양도서식(stock transfer form)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 전자거래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stamp duty reserve tax)를 납부해야 함⁷⁶⁾
 - 증권거래세의 적용대상에는 국내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영국에 등록된 외국회사의

74)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15.

75) Cave and Wünschmann-Lyall(2012), p. 18.

76) 영국의 금융거래세는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financial-transaction-tax-survey/Pages/uk.aspx>

주식, 주식 콜옵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⁷⁷⁾

- 반면, 자선단체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선물거래, 계열사 간 주식이전 등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됨⁷⁸⁾

□ 증권거래세는 증권 취득가액에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증권의 취득대가로 현금 대신 다른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에 기초하여 증권거래세를 계산함

□ 채권 거래 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⁷⁹⁾

- 증권예탁증권(CREST depository interests) 거래 시 예탁된 채권이 채권면제요건 (loan capital exemption)⁸⁰⁾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바닐라 채권(vanilla structured bonds)⁸¹⁾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전환사채는 과세됨
- 금태증권이나 지정된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도 비과세됨
- 예탁된 증권이 해외증권(foreign security)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됨
 - 그러나 영국이 발행하는 유로본드(Eurobond)에 대해서는 해외증권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77) <http://www.hmrc.gov.uk/sdrt/intro/basics.htm>

78) Unitaid(2011), p. 26.

79) <http://www.londonstockexchange.com/traders-and-brokers/security-types/retail-bonds/stamp-duty/sdrt.htm>

80) FA 1986, §79(4)

81)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화채권임. 구조화채권(structure note)이란 전통적인 채권의 구성요소인 액면가, 액면이자, 액면이자율 또는 만기를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구조화하여 만들어진 채권임

5. 독일

가. 개관

1) 채권의 양도차익 과세 여부

- 독일의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별개의 제도가 적용됨⁸²⁾
 - 첫째,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25%로 분리과세됨
 - 둘째, 납세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의 60%에 대해 종합과세됨
 - 소득금액의 50%에 대해 과세하던 종전의 50%소득방식(half income method)이 소득금액의 60%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부분소득방식(partial income method)으로 변경됨
 - 셋째,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은 95% 과세면제됨
- 개인의 금융소득은 모두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 독일 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모두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분류됨⁸³⁾
 - 이러한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5%의 단일세율과 소득세액의 5.5%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채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됨

82) 독일 조세정보센터, Tax on income from capital assets from 2009, pp. 1~3.

83) 原 武彦(2009), p. 225.

2) 양도차익 과세제도 연혁

- 2009년 이전 독일은 일부 자산의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왔음
 - 구법에서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았음⁸⁴⁾
 - 또한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2009년 이후로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 전체를 저율과세함⁸⁵⁾
 - 즉,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변경됨
 - 세계개혁의 기본 목적은 독일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 관한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임⁸⁶⁾
 - 금융소득은 신속하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수익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경제적·실리적으로 저율과세를 채택함⁸⁷⁾

〈표 Ⅲ-15〉 독일의 자본소득과세 변천

	2008년 이전	2009년 이후
배당소득	배당금의 50%에 대해 종합과세	25%의 단일세율 적용
이자소득	종합과세	
양도차익	주식, 펀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종전과 동일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주: 자본소득인 nonbusiness capital income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인 business capital income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
 자료: Kessler & Eicke(2007), p. 838 - Figure 1. 참조

84) Dechert, New german capital income and capital gains laws mean increased taxes for investors, special alert, Jan. 2009, p. 1.
 85) 오윤(2012), p. 185.
 86) 原 武彦(2009), p. 229.
 87) 原 武彦(2009), p. 228.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1) 과세대상

-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되며,⁸⁸⁾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규정함⁸⁹⁾
 - 주식, 채권, 그 밖의 자본상품(full risk certificates, 옵션 및 스왑)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 배당표(dividend coupon), 이표(interest coupon), 경영비참여파트너(silent partners)의 참가 및 그 밖의 자본에 대한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 investment fund unit의 양도차익 등

2) 세율구조

- 금융소득은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불리한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종합과세하는 경우 14~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Ⅲ-16〉 독일 종합소득세율

(단위: 유로, %)

독신자		부부합산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세율
~ 8,004	0	~ 16,008	0
8,005 ~ 13,469	14.00 ~ 23.97	16,009 ~ 26,939	14.00 ~ 23.97
13,470 ~ 52,881	23.97 ~ 42	26,940 ~ 105,763	23.97 ~ 42
52,882 ~ 250,730	42	105,764 ~ 501,461	42
250,731 ~	45	501,462 ~	45

88) Dechert(2009), p. 1.

89) 독일 소득세법(EStG) §20(2)

3) 양도차손익 산출방식

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독일의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은 총자본소득(gross investment income)에서 일괄공제(annual lump sum allowance)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어 있음
 - 일괄공제액은 연 801유로(또는 부부합산 1,602유로)임

- 한편, 총투자소득에 대해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투자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융비용은 공제되지 않음⁹⁰⁾

나) 손실공제

-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나,⁹¹⁾ 양도차손은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함⁹²⁾
 - 다만, 주식의 양도차손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주식의 양도손실 외에 다른 양도손실은 이자, 배당 등의 다른 자본소득과 통산할 수 있음

4) 징수방법

- 채권 양도차익을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방식에 의함⁹³⁾
 -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 또는 지급대리인(paying agent)이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함⁹⁴⁾

90) Dechert(2009), p. 1.

91) Kessler & Eicke(2007), p. 838.

92) Dechert(2009), p. 1.

93) Dechert(2009), p. 2.

94) IBFD, Investment Fund & Private Equity

- 예를 들어, 독일 은행계좌에 보유된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investment units의 양도차익의 경우, 독일 은행이 지급대리인임
 - 반면, 해외 중개인(foreign broker)을 통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소득세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함
- 투자자가 여러 개의 자본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자본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게 됨⁹⁵⁾
- 미사용 손실금액은 공제기간의 제한 없이 차년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소급공제는 불허함
 - 해당 은행은 다른 은행의 계좌에 보유된 자본상품의 손실과는 직접 공제할 수 없음
 - 양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손실인증서를 발급함⁹⁶⁾
 - 투자자는 손실인증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다른 투자 소득에 대해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⁹⁷⁾
-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세율을 적용함

다. 거래세 운영 여부

- 독일은 1999년에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금융거래세를 운영하지 않음⁹⁸⁾

95) Dechert(2009), p. 2.

96) 原 武彦(2009), p. 227.

97) Dechert(2009), p. 2.

98)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financial-transaction-tax-survey/Pages/Default.aspx>

6. 호주

가. 개관

1) 자본이득세 연혁

- 호주는 1985년 9월 20일부터 CGT(capital gains tax)를 과세하기 시작함
 - 자본이득세란 용어로 사용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는 형태임

- 1999년 9월 21일 이전에 1년 이상 보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계산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였음
 - 1999년 9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해 '양도차익 할인규정'과 물가연동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으로서 TOFA(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s) 규정이 2001년, 2003년, 2009년에 걸쳐 개정되었음⁹⁹⁾
 - 이 규정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소득유형과 과세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종전 소득세법 규정은 금융상품의 법적 형태를 중시하여 경제적 실체가 유사한 금융상품 간의 과세 일관성이 떨어짐
 - 또한 금융상품 손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분배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 TOFA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채와 자본의 구분, 외환손익 규정, 헤징 거래 규정, 소득분류 및 과세시기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됨

99) ATO, Guide to The 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s(TOFA) Rules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x?doc=/content/00194622.htm>

2) 채권 양도차익 과세 여부

- 채권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됨
 - 회사채의 경우 TOFA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타손익(other gain or loss)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됨
 - 국채의 경우에는 TOFA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손익(capital gain or loss)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됨¹⁰⁰⁾
 - TOFA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됨

[그림 Ⅲ-3] 채권 양도손익 과세방식

회사채		국채
TOFA 규정 ×	TOFA 규정 ○	TOFA 규정 ×
기타손익	TOFA 손익	양도손익
종합소득 합산		

- TOFA 규정은 1년 이상 보유한 금융상품으로서 상당한 소득금액이 이연된 경우이거나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됨
 - TOFA 규정은 회사채, 전환사채(convertible notes), 파생상품 및 정기예금(term deposits)과 같은 금융상품(financial arrangements)의 손익에 대한 과세를 현대화하는 규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TOFA 규정을 적용해야 함

100)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2011), p. 11.

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¹⁰¹⁾

1) 과세대상

- CGT 자산(capital gains tax asset)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에 대해 CGT 과세규정이 적용됨¹⁰²⁾
 - CGT 자산은 수집품(collectables), 개인소비용 자산(personal use assets), 기타 자산(other assets)으로 구분됨
 - 수집품에는 미술품, 보석, 골동품, 주화 등이 포함됨
 - 개인소비용 자산에는 보트, 가구, 전자제품 등이 해당함
 - 기타 자산으로서 토지, 주식, 권리 및 옵션, 리스, 영업권, 라이선스, 전환사채(convertible notes), 주택 등이 포함됨

- 채권도 CGT 자산에 포함되므로, 채권 양도손익은 과세됨
 -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자산은 CGT 과세규정이 적용됨¹⁰³⁾

2) 세율구조

- 2012/13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19~45%의 누진초과세율임

101) 이하에서는 CGT 과세규정을 중심으로 기술함

102) www.ato.gov.au(Guide to capital gains tax 2011-12)

103) www.ato.gov.au(Guide to capital gains tax 2011-12)

〈표 Ⅲ-17〉 호주 거주자의 소득세율

(단위: 호주달러, %)

과세소득	세율
18,200	0
18,201 ~ 37,000	19
37,001 ~ 80,000	32.5
80,001 ~ 180,000	37
180,001 ~	45

3) 양도손익 산출방식

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CGT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 순양도차익(net capital gain)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순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보유기간과 자산취득시기에 따라 물가연동방식(indexation method), 할인방식(discount method), 기타방식(other method)의 세 가지로 구분됨

〈표 Ⅲ-18〉 호주 CGT 순양도차익 계산방식

	물가연동방식	할인방식	기타방식
설명	소비자가격지수(CPI)에 기초하여 취득가액 증액	양도차익에 대해 50% 소득공제(CGT 할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 방식
사용시기	-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할인방식보다 유리한 경우 - 1999년 9월 21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만 적용됨	-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물가연동방식보다 유리한 경우	-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계산방법	양도가액 - 조정취득가액 - 양도차손 = 순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손 - CGT 할인 = 순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손 = 순양도차익

자료: www.ato.gov.au(Guide to capital gains tax 2011-12)

나) 손실공제

- 당해 연도의 순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함
 - 총양도차손이 총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순양도차손이 발생함
 - 순양도차손은 기간한도 없이 이월공제되며, 손실이 발생한 순서대로 다음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함
 - 개인소비용 자산의 양도차손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

4) 징수방법

- 채권의 양도손익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과세됨
 - 소득세 보충신고서(tax return for individuals(supplementary section))의 18번 항목 자본이득란에 당해 연도 양도차익과 다음해로 이월될 양도차손을 기록함

다. 거래세 운영 여부

- 호주는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지세(stamp duty)를 과세하고 있는데, 일부 주식거래만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채권거래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¹⁰⁴⁾

104) New South Wales 주: http://www.osr.nsw.gov.au/taxes/transfer_shares/
 Victoria 주: <http://www.sro.vic.gov.au/SRO/SROnav.nsf/childdocs/-3A87315B22BC23FFCA2575A100441F59-21D4CF8CA10137DCCA2575A100442047-9DB9932B7E91D786CA2575D0002B096A?open>
 South Australia 주: <http://www.revenuesa.sa.gov.au/stamps/sdshares.html>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치구: http://www.revenue.act.gov.au/duties/shares,_units_and_interests
 Queensland 주: <http://www.osr.qld.gov.au/duties/transfer-duty/index.shtml>
 Western Australia 주: <http://www.finance.wa.gov.au/cms/content.aspx?id=2059>
 Tasmania 주: <http://www.sro.tas.gov.au/domino/DTF/SROWebsite.nsf/v-all/4A37757DB310B097CA257589007C5A9F?OpenDocument&menuitem=Property Transfer Duties>
 Northern Territory 자치구: <http://www.treasury.nt.gov.au/TaxesRoyaltiesAndGrants/StampDuty/Pages/Duty-Types-and-Rates.aspx>

- 모든 지방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이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수분배 조정작업의 결과임
 - 1999년에 연방정부는 기존에 주정부에 교부하던 금융보조금과 safety net revenue 대신 GST 세수 전액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1년에 GST를 도입하면서 주정부는 금융기관세(financial institutions duty)¹⁰⁵⁾와 상장주식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¹⁰⁶⁾
-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지세도 Victoria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치구가 각각 2002년, 2010년에 폐지함

105) 금융기관세는 은행 예금 등에 예치된 금액에 부과하던 세금임

106)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2003), p. 5.

IV. 채권 자본이득 과세 국제비교

1. 채권 자본이득 과세방식

-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에서는 채권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부 국공채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채권 유형별로 큰 차이는 없음
 - 일본은 국내발행이자부채권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지만,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
 - 과세대상채권에는 국외할인발행채권, 할인발행공사채 중 이자부채권, 국내할인발행채권, 무이자 액면발행채권, 국내할인발행 특정 단기공사채,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이 있음
 - 영국은 대부분의 채권이 비과세되는 적격회사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 자본이득을 거의 과세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손실 발생 양도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wash sale) 그 손실은 대체취득한 채권의 양도시점에 인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즉, 손실이 발생한 양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큼 대체취득한 채권의 장부가를 증가시키면 대체취득 채권의 매각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때 이연된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순손실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일반소득과 상계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소득에서의 공제를 목적으로 순손실을 실현하고 대체취득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wash sale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을 당기에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조사대상국 모두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손실의 인식을 방지하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채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식(종합과세 방식)과 일반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저율과세방식)이 있을 수 있음
 - 미국은 종합과세방식과 저율과세방식을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단기자본이득에 종합과세,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함
 - 일본과 호주는 종합과세방식만을 적용함
 - 다만, 일본이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에 저율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주식과 동일한 과세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임
 - 영국, 독일, 프랑스는 모두 저율과세만을 적용함
 - 다만, 독일은 저율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임

- 종합과세는 누진과세 형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율과세보다는 세부담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장기자본이득에서만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신주예약권부 사채 등에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형태의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한 과세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과 달리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으로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임

- 조사대상국 중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뿐임
 - 이는 과세원칙상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세행정상의 문제로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과세하기가 편리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에서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영국은 자본이득을 과세하면서 거래세도 부과하는 형태임

- 다만, 주식과 달리 채권 자본이득은 거의 과세되지 않음
- 일본은 과거에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대신 유가증권거래세를 부과 하였으나 1998년 이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주식 채권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 프랑스는 최근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었고 채권은 금융거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표 IV-1〉 채권 자본이득 과세 방식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자본이득 과세여부		○ ¹⁾	△ ²⁾	△ ²⁾	○	○	○
과세 방식 및 세율	종합 과세	단기자본이득: 10%, 15%, 25%, 28%, 33%, 35%	무이자채권 등: 5%, 10%, 20%, 23%, 33%, 40%	저율과세: 18%, 28%	저율과세: 25% (종합과세 선택: 14~45%)	종합과세: 19~45%	저율과세: 34.5%(자본이득세 19%+social tax 15.5%)
	저율 과세	장기자본이득: 20%, 15%, 0%	신주예약권부사 채 등: 20%				
징수방법		신고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	원천징수	신고납부	신고납부
거래세 유무		×	×	○	×	×	×

주: 1) wash sale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인식은 매도시까지 이연함
 2) 채권 유형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됨

2. 채권의 보유기간 및 유형별 과세상 차이

- 채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채권의 유형이나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과세가 달라질 수 있음
-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는 보유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장기보유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유리하게 과세하고 있음
 - 장기보유에 대하여 미국은 세율을 경감시키는 방식이고 일본, 호주, 프랑스는 보유

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임

- 미국은 장단기 구분이 1년이고 단기는 누진세율, 장기는 경감된 단일세율을 적용함
- 일본은 장단기 구분이 5년이고 장기보유자산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만 총소득에 포함함
- 호주도 장단기 구분은 1년이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차익은 50% 공제 혜택이 있음
- 프랑스는 6년 이상 보유 시부터 양도차익의 1/3씩 공제하여 8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0% 공제됨

□ 장기보유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일본, 호주, 프랑스만 비교해 보면, 보유기간 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호주가 더 유리하고 공제율 면에서는 프랑스가 더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즉, 호주는 보유기간 요건이 1년이므로 일본과 프랑스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프랑스는 보유기간 요건은 길지만 일단 8년 이상 보유하면 100% 공제까지 허용하므로 공제율 면에서 일본과 호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채권 유형별로 비과세, 종합과세, 저율과세로 달리 과세하고 있음

- 일반적인 채권유형이라 할 수 있는 국내발행 이자부채권은 비과세하지만 무이자 또는 저리채권은 종합과세에 의한 누진세율 적용,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은 저율과세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함
 - 저율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임

〈표 IV-2〉 보유기간 및 자산 유형별 과세상 차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보유기간 ¹⁾	장기	보유기간 1년 이상: 저율과세, 단일세율(20%, 15%, 0%)	보유기간 5년 초과 자산의 양도차익 50% 공제	차이 없음	차이 없음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양도차익의 50% 소득공제	6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3씩 공제 ⁷⁾
	단기	보유기간 1년 미만: 종합과세, 누진세율 ²⁾	양도소득 100% 총소득 포함			양도차익 100% 과세	
유형	국공채	· 재무부발행장기채권 ³⁾ : 비과세 · 재무부발행단기채권: 과세	· 이자부 채권: 비과세 · 무이자 또는 저리채권: 누진세율 ⁴⁾ · 신주예약권부사채 등: 20.315% ⁵⁾	금태증권: 비과세	차이 없음	· 국채: 양도손익으로 구분, 종합소득 합산 ⁶⁾ · 회사채: 기타손익으로 구분, 종합소득 합산 ⁵⁾	차이없음
	회사채	과세		· 적격회사채 ⁸⁾ : 비과세 · 비적격회사채:과세			

- 주: 1) 보유기간에 대한 과세상 차이는 채권을 포함한 자본자산 전체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적용하는 것임
 2) 누진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임
 3) 재무부 발행 장기채권은 Treasury bonds, Treasury notes이고 재무부발행 단기채권은 Treasury bill임
 4) 누진세율은 5%, 10%, 20%, 23%, 33%, 40%임
 5) 소득세 15%, 소득세의 2.1% 부흥특별소비세(0.315%), 주민세 5%를 합한 세율임
 6) TOFA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7) 8년 이상 보유 시 100% 공제됨
 8) 1984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한 회사채

3. 소득공제 및 양도손익 간 통산

- 조사대상국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에서 자본이득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는 장기보유양도차익에 대해서 5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유사한 형태이지만 장기보유기간이 일본은 5년, 호주는 1년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본은 단기 및 장기 보유양도차익에 대해서도 50만엔의 공제가 허용됨

- 영국과 독일은 장·단기 구분 없이 각각 10,600파운드, 801유로의 공제를 허용함
 - 프랑스는 현재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2010년까지는 25,830유로의 공제를 허용하였음
- 채권과 같은 형태의 자산의 양도익을 산정하는 경우, 매도시점에 발생한 양도익은 명목 금액이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하락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한 조정장치가 필요함
- 영국이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조정장치를 의미함
- 모든 조사대상국가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에 대해 서로 상계하여 과세하는 방식임
- 다만, 미국은 장·단기를 구분하여 단기양도손실은 단기양도이익과 통산하고 장기양도손실은 장기양도이익과 통산하여 순단기양도손익과 순장기양도손익을 산출함
- 손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모두 일반소득에서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연간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하여 공제함
 - 프랑스는 손손실의 이월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
- 소득공제, 양도손익의 통산 및 손손실의 처리가 국가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미국의 경우 몇 가지 특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일반소득에서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손익 통산에 있어서도 장·단기를 구분함
 - 손익통산에 장·단기를 구분하는 것은 각기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임

〈표 IV-3〉 소득공제 및 양도손익 간 통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소득 공제	없음	종합과세: 50만엔 ¹⁾ 공제, 장기보유양도 차익은 50% 공제	10,600 파운드 ²⁾	연 801유로 (부부합산 1,602유로)	50% 소득공제 (보유기간 1년 이상인 경우만)	없음 (2010년까지 25,830유로 공제 ³⁾)
양도 손익 통산	· 단기양도손실은 단기양도 이익과 통산 · 장기양도손실은 장기양도 이익과 통산	분리과세: 양도손은 '주식 등의 양도익'과 통산	장단기 구분 없이 통산	· 장단기 구분 없이 통산 · 주식양도이익은 양도 손실과 통산	장단기 구분 없이 통산	장단기 구분 없이 통산
순손실의 처리	· 연간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 · 무기한 이월 (장·단기 속성 유지)	일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일반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 무기한 이월	· 일반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 무기한 이월	· 일반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 무기한 이월	· 일반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 10년 이월

주: 1) 단기양도익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 잔액만큼을 장기양도익에서 차감함
 2)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여부가 결정됨
 3) 유가증권 등(주식, 공사채,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공제되는 금액임
 1. 소득공제 금액이나 양도손익 통산 및 양도순손실에 관한 규정은 채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자본자산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V. 결론 및 시사점

-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이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국내 채권 거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채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채권 양도차익 과세에 과세제도 개선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조사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은 반면 조사대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즉,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과세할 뿐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기업의 입장에서 채권은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고 주식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증권으로서 채권과 주식은 자본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이므로 채권 자본이득 과세는 주식 자본이득과세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부분임
 - 영국이 현재의 자본이득세 형태를 갖춘 것이 1965년이고 미국도 1942년에 이미 양

도차익과세가 정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1989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원칙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유가증권 자본이득에 대해서 다른 자본자산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채권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식 또는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저율과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금융소득의 이동성과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미국은 종합과세와 저율과세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 호주는 종합과세만을,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저율과세만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채권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경우,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 또는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선택은 해당 국가 내에서 채권 외의 모든 자본자산과의 형평성 내지는 실무적인 징수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임
 -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 또한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주예약권부사채 자본이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면, 신고납부방식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과세를 하는 국가는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조사대상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에서 채권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고방식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고유한 형태로 보유기간 및 자산 유형별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고 일정 규모의 공제 및 자본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음
- 채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 또는 기타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2004년 세계조사회 금융소위원회가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에 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발표한 이래 수년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득과세 일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참고문헌

- 국중호·한상국,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6. 9.
- 문성훈,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6집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0.
- 박명호·기은선·정희선,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오 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8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2010.
- 日本証券業協會, 『證券稅制 가이드』, 2011.
- 日本PWC, 「諸外國の金融所得課税の動向(デリバティブ取引に係る課税を中心)に関する調査研究」, 2011. 1.31.
- 原 武彦, 「金融所得課税の一体化に向けての論点と在り方」, 『税大論叢』 60号, 2009.
- 前田繼男, 『個人投資家の証券稅務讀本』, 2012.
- 吉井 一洋, 「証券金融稅制の今後」, 『大和總研調査季報』 2011年 春季号 Vol.2
- 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Memorandum Treasury Bonds,” Jul. 2011.
- Cave, “Rebecca and Wünschmann-Lyall Iris,” *Capital Gains Tax 2012/13*, Bloomsbury Professional, 2012.
- Dechert, “New German Capital Income and Capital Gains Laws Mean Increased Taxes for Investors,” Special Alert, Jan. 2009.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Reforming Western Australia's Taxation System*, Dec. 2003.

HMRC, "Debts and Capital Gains Tax," Helpsheet 296, 2012.

_____, "SA 108 Notes - Capital gains summary notes," 2012.

_____, "SA 110 Notes - Tax calculation summary notes," 2012.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11".

Kessler, Wolfgang & Eicke Rolf, "Welcome to the German Dual Income Tax," *Tax Notes International*, Vol. 47 No. 9, Aug. 2007.

Tiley, John and Loutzenhiser Glen, *Revenue Law*, Seventh edition 2012, Hart publishing, 2012.

Unitaid,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An Implementation Guide*, Sep. 2011.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http://www.kofiabond.or.kr/MAIN/index.asp>)

한국거래소, KRX자본시장통계포털

(<http://stats.krx.co.kr/contents/basic/pub/main.jsp?scrnId=3010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독일 조세정보센터, www.germantaxes.info

영국 국세청(HMRC), www.hmrc.gov.uk

호주 국세청(ATO), www.ato.gov.au

호주 New South Wales 주 세입국, www.osr.nsw.gov.au

호주 Victoria 주 세입국, www.sro.vic.gov.au

호주 South Australia 주 세입국, www.revenuesa.sa.gov.au

호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자치구 세입국, www.revenue.act.gov.au

호주 Queensland 주 세입국, www.osr.qld.gov.au

호주 Western Australia 주 재무국, www.finance.wa.gov.au

호주 Tasmania 주 세입국, www.sro.tas.gov.au

호주 Northern Territory 자치구 재무국, www.treasury.nt.gov.au

IBFD, www.ibfd.org

<http://www.kpmg.com/Global/en/IssuesAndInsights/ArticlesPublications/financial-transaction-tax-survey/Pages/uk.aspx>

<http://www.londonstockexchange.com/traders-and-brokers/security-types/retail-bonds/stamp-duty/sdrt.htm>

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2012년 12월 21일 인쇄

2012년 12월 27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송은주 · 마정화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48-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